

[서식 예] 친양자 입양청구서(공동입양)

친양자 입양의 심판청구

| 청 구 인 | 1. ○ ○ ○(주민등록번호 : -) |
|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| 주소 : ㅇㅇ시 ㅇㅇ구 ㅇㅇ길 ㅇㅇㅇㅇ번지 |
| | 등록기준지 : ○○시 ○○면 ○○길 ○번지 |
| | 전화번호 : |
| | |
| | 2. △ △ △(주민등록번호 : -) |
| | 주소 및 등록기준지 위와 같음 |
| | 전화번호 : |
| | |
| 사 건 본 인 | □ □ □(주민등록번호 : -) |
| | 사건본인들 주소는 위와 같음 |
| | 등록기준지 □□광역시 □□구 □□길 □□번지 |
| | |

청 구 취 지

사건본인들을 청구인들의 친양자로 한다.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.

청 구 원 인

- 1. 청구인들은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로서 공동으로 사건본인을 친양자로 입양하고 자 합니다.
- 2. 청구인 ○○○와 사건본인은 먼 친족 사이로서 사건본인의 부모가 20○○년 ○월 ○일 사고로 모두 사망한 이후 현재까지 청구인들이 사건본인을 잘 양육하고 있습니



다.

- 3. 청구인들은, 사건본인이 더 행복하고 구김살 없게 자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, 사건본인을 친양자로 입양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여 이 사건 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.
- 4. 이 사건 청구와 관련된 사항(가사소송규칙 제62조의2 규정 사항)은 별지 목록 기재 와 같습니다.

첨부서류

 1. 청구 관련 사항 목록
 1통

 2. 가족관계증명서(사건본인)
 1통

3. 기본증명서(사건본인) 1통

4. 혼인관계증명서(청구인들) 1통

5. 주민등록등본(청구인들 및 사건본인) 각 1통 (다만 청구인들과 사건본인이 함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2는 1통만 제출하 면 됩니다)

- 6. 친양자 입양 동의서(친생부모) 및 인감증명서(단 인감증명서는 작성자가 직접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만 필요합니다) 각 1통
- 7.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은 사건본인의 입양승낙서(13세 이상) 및 인감증명서(단 인감증명서는 작성자가 직접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만 필요합니다) 각 1통
- 8. 법정대리인의 입양승낙서(13세 미만) 및 인감증명서(단 인감증명서는 작성자가 직접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만 필요합니다) 각 1통

20 0 0 0 0 0 0 (인)

○○가정법원{○○지방법원(지원)} 귀중



<청구 관련 사항 목록>

| 구 분 | 내 | 용 (□에 √ 표시를 | 를 하거나 해당 사항을 기재하십시오.) | | |
|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|--|
| 1. 친양자로 될 자의 친생부모가 친양자 입 양에 동의하였는지 여 부 | 부(父) | □ 동의함 □ 동의하지 아니함 | 동의할 수 없는 사정(「민법」제908조의2 제1항 제3호 단서, 제2항 각호 참조) | | |
| | | 이 름 | 주 소 | | |
| | | | | | |
| | 모(母) | □ 동의함 □ 동의하지 아니함 | 동의할 수 없는 사정(「민법」제908조의2 제1항 제3호 단서, 제2항 각호 참조) | | |
| | | 이 름 | 주 소 | | |
| | | | | | |
| 2. 친양자로 될 자에 대하여 친권을 행사하 는 자로서 부모 이외 의 자의 이름과 주소 | | 이름 | 주 소 | | |
| | | | | | |
| | | | | | |
| | □ 해당 없음 | | | | |
| 3. 친양자로 될 자의 부모의 후견인의 이름 과 주소 | □ 있음 | 이 름 | 주 소 | | |
| | | | | | |
| | □ 해당 | 없음 | | | |
| 4.「민법」제908조의2 제1항 제4호 및 제5호 에 의한 법정대리인의 동의 또는 입양승낙 | □ 승낙형 | 하 | 동의 또는 승낙할 수 없는 사정(「민법」 제908조의2 제2항 각호 참조) | | |

☞ 유의사항

- 1. '친생부모가 동의를 할 수 없는 사정'은 「민법」제908조의2 제1항 제3호 단서의 '친권상실, 소재불명, 기타'이고, 제2항 각호의 '부양의무불이행, 면접교섭불이행, 학대, 유기 등'입니다.
- 2. '친양자로 될 자에 대하여 친권을 행사하는 자로서 부모 이외의 자'는, <u>사건본인의 부 또는 모가 결혼하지 아니한 미성년자인 경우(즉 혼인하지 않은 미성년자가 자를 출산한 경우)에 이에 대신하여 친권을 대행하는 그 미성년자의 친권자(민법 제910조) 또는 후견인(민법 제948조)</u> 등입니다.



| 제출법원 | 친양자로 될 자의 주소지의 가정법원(가정법원 또는 가정지원 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은 해당 지방법원 또는 지방법원 지원) | 관 련 법 규 | 민법 제908조, 1041조, 가사소송법 제44조 | | |
|-------|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|
| 신 청 인 | · 공동신청(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) ·단독신청(1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의 일방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입양하는 경우) | | | | |
| 비 용 | ・인지액: 사건본인 1명당 수입인지 5,000원(☞가사소송 및 비송사건수수료표) ・송달료: 청구인수×3,700원(우편료)×10회분 | | | | |
| 기 타 | 재판확정시부터 혼인중의 자로 간주되며 동시에 친생부모와의 법적인 관 계가 모두 소멸됨. | | | | |

제908조의2(친양자 입양의 요건 등) ① 친양자(親養子)를 입양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을 청구하여야 한다.

- 1.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로서 공동으로 입양할 것. 다만, 1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의 한쪽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2. 친양자가 될 사람이 미성년자일 것
- 3. 친양자가 될 사람의 친생부모가 친양자 입양에 동의할 것. 다만, 부모가 친권상실의 선고를 받거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4. 친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이상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입양을 승낙할 것
- 5. 친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그를 갈음하여 입양을 승낙할 것
- ② 가정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·제4호에 따른 동의 또는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승낙이 없어도 제1항의 청구를 인용할 수 있다. 이경우 가정법원은 동의권자 또는 승낙권자를 심문하여야 한다.



- 1. 법정대리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 또는 승낙을 거부하는 경우. 다만, 법정대리인
- 이 친권자인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사유가 있어야 한다.
- 2. 친생부모가 자신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3년 이상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면접교섭을 하지 아니한 경우
- 3. 친생부모가 자녀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
- ③ 가정법원은 친양자가 될 사람의 복리를 위하여 그 양육상황, 친양자 입양의 동기, 양부모의 양육능력,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친양자 입양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